강 남 구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제목 재산세(토지) 부과취소결정서_세곡동

재산세(토지)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【부과취소및변경】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.

1. 납 세 자 : ***
2. 과세물건 : *******
3. 취소사유 : **********9월분 재산세가 착오부과되어 부과취소하고, 정상 납세자인 ********에게 2015년 10월 수시분 재고지
4. 취소내역 :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(토지)

세 목	당 초	취소(경정)	차 액	비 고
재 산 세 (토 지)	25,916,550	25,916,550	0	
도 시 지 역 분	18,141,580	18,141,580	0	
지 역 자 원 시 설 세			0	
지 방 교 육 세	5,183,310	5,183,310	0	
합 계	49,241,440	49,241,440	0	

첨부 1. 부과취소(경정)결정서 1부.
2. 부과취소내역서 1부.
3. 감액참고자료 1부. 끝.

주무관 오애리 재산1팀장 이규화 세무1과장 이상규 기획경제국장 10/12 김용운

협조자

시행 세무1과-20428 ( ) 접수 ( )

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전화 02-3423-5647 /전송 02-3423-8833 / ohri99@gangnam.go.kr / 부분공개